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개선요구

[제 목] 각종 위원회 규정 개정 및 운영 개선

[소 속 기 관] 고양시체육회

[내 용]

고양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체육회 정관」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정관」 제37조에 따라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규정인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이외의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 *명, 부위원장 *2명 이하 포함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 *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장학제도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 등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기력향상위원회』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위원회』를 비롯한 그 어떤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체육회 「정관」 제37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가 없고, 제 규정인 운영위원회 규정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어 제정되어 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기능)에는 ①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②이사회 부의 안건 사전 심의 조정, ③이사회 위임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규정된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 ④예산수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후원금 등), ⑤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회원단체 임원변경에 관한 사항, ⑥정관 제9조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⑦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⑧그 밖의 회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이사회』, 『여성체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기관 의견]

고양시체육회는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 통합 이전에 운영되었던 운영위원회가 통합 이후에도 관행처럼 운영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규정에 맞도록 제도개선 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양시체육회장은

가. 「정관」 제3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기능을 분리하여 경기력향상

위원회 및 여성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분리 설치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각 분야별(위원회별)로 기능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복 규정으로 확인되는 운영위원회 규정과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관」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통합하여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기관주의

[제 목]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소 속 기 관] 고양시체육회

[내 용]

고양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는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 수행을 위해 「회계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회계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시체육회는 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해당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법인회계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시체육회 「회계 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체육회는 회계관계 직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 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체육회는 보험기간 만료일 ****년 *월 *일을 마지막으로 감사일 현재 재정보증보험을 재가입 하지 않고 있으며,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 규정」 제8조(회계관계직원)에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 ○○○○, ○○○○○○ 등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시체육회 ○○○○○○은 회계 재정보증보험 기간 만료 이후 회계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재가입(갱신)이 누락됐다고 답변하였으며, 해당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양시체육회장은

가. 회계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어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예산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하시기 바라며,

나.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개선·통보 요구

[제 목] 사무국 민원업무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고양시체육회

[내 용]

고양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공공성 및 투명성이 증대된 법정법인 공직유관단체로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시체육회는 민원을 접수받을 수 있는 접수창구를 마련하거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접수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정확성을 위해 관련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민원 사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체육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민원접수를 위한 전자민원창구로 홈페이지 게시판(나눔마당-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게시글(홍보글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민원인들이 신고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처리상황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체육회는 민원접수대장을 관리(**년 *건, **년 *건)하면서 외부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만 기입하고, 홈페이지 게시판(나눔마당-게시판)에 접수된 민원(**년 **건, **년 *건, **년 **건)은 기입하지 않는 등 민원관리에 소홀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시체육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민원처리대장이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으며, 추후 규정 제정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에 별도 민원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감사 확인 결과 홈페이지 게시판(나눔마당-게시판)을 통해 민원신청 및 답변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고양시체육회장은

가. 경기도체육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속히 규정(제정)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나. 아울러 민원인이 언제든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체육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창구를 조속히 개설(수정)하시어, 민원 처리에 대해 확인 및 점검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